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54호 2018. 8. 8.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823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823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특정계층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를 제2조제5항과 제6항 신설 (안 제2조)

나.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원시책 담당부서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안 제6조, “별표 1”)

다. 공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 등 지원대상자 기준 신설(안 제7조, “별표 2”)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선군의회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2018. 8. 6. ~ 8. 26.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033-560-2253
- F A X: 033-560-2590
- E-mail: tan00@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특정계층”이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 4의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를 말한다.

제6조 “별표 1”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 “별표 2”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별표1의 공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u> 제2조(정의) 1. ~ 4. (생략)	<u>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u> 제2조(정의)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공공임대주택</u>”이란 「<u>공공주택특별법</u>」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u>특정계층</u>”이란 「<u>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u>」 제15조 별표 4의 <u>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u>를 말한다.
제9조(구성) ① ~ ③ (생략) 1. ~ 3. (생략) 4. 정선군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생략) ④ (생략)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담당부서 및 분야별 총괄부서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1. 임신·출산 지원	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보건소
	나. 임신부 건강교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다.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마. 난청조기진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환아 관리		
	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주민생활지원과
	아. 긴급복지 해산비(해산급여)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복지법	
	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카. 입양아동가족지원	의료급여법	
	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입양특례법	여성청소년과
	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지역경제과
	하. 출산장려금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청소년과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2. 보육·교육지원	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여성청소년과
	나. 영유아보육료		
	다. 방과 후 보육료		
	라. 누리과정 보육료	유아교육법	
	마.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사. 다자녀(셋째아) 가정 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지원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아.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자.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원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카.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복지법	
	타.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소
	파. 친환경 학교급식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하.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축산법, 낙농진흥법,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3. 귀농·귀촌인 지원	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나. 귀농·귀촌인 농업기반시설 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다. 귀농·귀촌인 빈집 수리비 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라. 귀농·귀촌 현장실습(기초영농 기술) 교육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4. 다문화가족 지원	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여성청소년과
	나.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	
	다. 통·번역 서비스 제공		
	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5.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6. 전입지원	가. 전입세대 화암관광지 무료 입장카드 배부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민원봉사과
	나. 정선아리랑상품권 지급		
	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라. 기초건강검진		보건소
	마. 군 장병 등 지원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7. 분야별 총괄 부서	가. 일자리분야		지역경제과
	나. 주거분야		도시건축과
	다. 임신·출산 분야		보건소
	라. 보육분야		여성청소년과
	마. 교육분야		여성청소년과
	바. 귀농·귀촌 분야		농업기술센터
	사. 전입분야		민원봉사과
	아. 사회적 소외계층 분야		주민생활지원과
	자. 성평등 분야		여성청소년과
	차.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자치행정과
	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분야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 관련 부서
	8. 인구늘리기 총괄부서: 자치행정과		

[별표 2]

세 부 지 원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배부	전입신고 시	○ 대상: 전입세대 ○ 화암관광지: 관람료 전액 면제 - 1회 유효 / 8인 가족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단 9인 이상 시 인원 확인 후 추가 지급 ○ 회동솔향캠핑장: 사용료 면제 - 1회 유효 / 데크1면에 대한 사용료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이웃사촌상품권	전입신고 시	○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1회에 한하여 정선아리랑상품권, 50,000원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신고 시	○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1회에 한하여 20ℓ / 20매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기초 건강검진 지원	전입신고 시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 대상: 전입세대 중 20세 이상 전입자 ○ 접수: 보건소 진료실 ○ 내용: 기초건강체크, 혈액 검사, 체지방검사 등 ○ 장소: 보건소·고한사복지소	보건소 (읍·면)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시	○ 대상: 출산일 기준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후 계속하여 정선군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전제로 12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정선군에서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월 40만원 지급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 월 80만원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정선군에서는 그 이후 1년 동안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 지급 ○ 지급처: 지역경제과 ○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역경제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전입세대 신청 시	○ 대상: 전입세대 ○ 지원: 전입세대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1대 (5만원 이하 지원) ○ 배부처: 읍·면	안전건설과 (읍·면)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공 국민임대 주택 보증금 지원	특정계층(중소 기업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 대상: 정선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및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세대)가 전입할 경우, 거주 이전에 따른 정부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세대 중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로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원 - 정선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및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세대)가 전입할 경우 임대보증금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거주 이전에 따른 정부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단, 타시군 전출, 중소기업 이직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 상실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지역경제과
	특정계층(신혼 부부)	○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및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로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단, 신청일 기준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 -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을 50% 이내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 단, 지원기간 중 부부 모두 타시군 전출, 이혼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 상실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도시건축과